

우)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, 8F[www.kma.org]/ 전화(02)6350-****/ 전송(02)790-8911
보험국 국장 김기성 [6574] 보험급여팀장 백영기 [6581] 팀원 문성현 [6587]/E-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8184호

시행일자 2018. 10. 5.

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, 각 학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(집행정지 안내)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별지3, 별지4 관련

1.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199호(2018. 9. 20.)
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2018. 9. 20. 고시한 「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199호) 별지3, 별지4 약제(첨부파일 참조)의 상한금액 변경처분을 2017구합72898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이 서울행정법원에서 10.2. 있었음을 안내하여온바,

3. 해당 130품목은 위 기간까지 조정전 상한금액이 유지됨을 알려드리오니, 귀 회 소속 회원들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: 집행정지 대상 130품목(동아ST)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